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대학교가 교재파일을 특정 출판사에  
유통시키는 등 해당 출판사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4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000000대학교  
피신청인 : KBS-1TV  
종 재 부 : 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2. 12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KBS-1TV : 「취재 파일4321」 프로그램 (2007년 1월 7일 22:20)

내 용 : ▷기자 : 최근 교수들의 논문 표절 시비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에도 지적 재산권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수들이 쓴 저작물을 일반 출판사에서 아무 동의도 받지 않고, 그것도 20년 넘게 그대로 표절해 왔다

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등록돼 있는 000 000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략)

00대 교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한 서점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로 나온 교과서와 함께 똑같은 제목의 참고서들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00대에서 법철학과 법 사상가를 강의하는 법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해 00대 법대 동료 교수와 함께 오랜 동안 준비해 온 책의 집필을 마쳤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을 방송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법철학 교과서.

그런데 이 교수는 놀랍게도 자신의 책이 출판되기도 전에 흡사한 내용의 책이 참고서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법철학 참고서는 교수가 학교에서 출판한 교과서 보다 오히려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저자의 책이 나오기도 전에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서 안에는 집필자들이 고안해 낸 독특한 용어와 도표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수들이 미처 고치지 못했던 틀린 글자도 그대로입니다. (중략)

○○대 교과서는 ○○대의 자체 출판부와 교수 사이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출판부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서 출판사에선, 이에 대해 저작권 협의 없이 교과서를 일부 표절 했다는 사실은 시인합니다.

참고서 업체와 ○○대 출판부 사이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도 그래서 나옵니다. (중략)

더구나 해당 출판사는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씩, 모두 1억 원을 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요구해서 낸 것이라고 출판사는 주장합니다.

▷이○○(○○출판사 대표) : “학교에서도 그동안 저희 보고 발전기금 낼 수 있겠느냐. 기금 안내서에 보면 세제상이나 기타 특별한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로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책을 만들어 먹고 사는 이런 회사에서 그나마 거절할 수 없잖아요.”

○○대 측은 오랜 관행인 표절 문제가 다시 불거져 자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보도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를 보도하는 가운데, Y출판사 참고서의 발행일이 ○○○대 출판부 교재의 발행일보다 빠르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파일 유출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출판과정상 정확한 발행일을 미리 기입할 수 없어 출판사들이 관계적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기입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일 비교는 발행시기를 비교하는데 적절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서점 입고일을 통해 비교해 본 결과, ○○대 출판부 교재의 서점 입고일이 Y출판사 참고서의 입고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대 출판부에서 출판한 교과서보다 Y출판사 참고서가 먼저 인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1월 7일 「취재보도4321」 프로그램에서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목으로 ○○○대 교재를 무단으로 베껴 판매하고 있는 Y출판사의 행태에 대한 보도 가운데 ○○○대 교재의 제작 과정에서의 파일 유출 가능성과 Y출판사와 대학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파일 유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이미 검찰조사를 통해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 어떤 유착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저작권을 침해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Y출판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대 교재 베끼기 관련보도
- 내 용 : 본 프로그램은 지난 1월 7일 「20년간 계속된 ‘교재 베끼기’」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출판사 ‘법철학’ 참고서가 ○○○○○○대 교재보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 측은 해당 교재의 서점입고일은 그 출판사 참고서보다 빠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취재파일 4321> 홈페이지 초기 화면 '공지사항&게시판'란 첫머리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KBS 홈페이지에서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와 위 보도문이 함께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홈페이지 : 『○○○○○○대 교재 빼끼기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3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조합이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충청신문 : 『○○○ 농협 북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1면)

내 용 : ○○○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이 강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구 ○○○동소재 ○○○농협(조합장 김○○)은 지난해 11월 28일 조합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임의로 변경해 그동안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부지점 토지매입과정과 부실채권정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던 조합원들을 타 지역에 살고 있다는 명목으로 20여년간 몸담아온 조합원의 대의원출마 등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합의 정관변경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60명 중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타지역 제외에 관한 안건이 정관변경에 포함돼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54명 중 29:25로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는 것이다.

조합원 S씨 등에 따르면 불법정관으로 이들을 대의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6월경부터 대의원선거에 대비 조합 반대파 대의원들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 그동안 조합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대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갈아치우기 작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또한 K씨는 조합간부들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사로 있는 몇 곳은 투명하게 하면서 일부대의원들(반대파)이 있는 지역은 당일 대의원선거

를 치룬다고 연락해 즉석뽑기식 선거를 치르고 어느 지역은 아예 연락도 취하지 않고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월 26일자 1면 『○○○ 농협 복마전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 농협이 농협운영과 관련하여 불법정관 변경, 조합원의 권리제한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법에 의거 2008년말을 기준회계년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농협은 수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를 시켰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정관 변경안은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표결 처리된 안건은 정관 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결이 아니라 대의원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일부조항을 조정하는 의결로써 일반 의결로 표결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은 합법적이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의 정관 변경 유효성에 대한 민원 제기로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서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대의원 선거 10일 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충청신문 2007년 2월 26일자 1면 “○○○ 농협 관련” 보도 중 다음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달라 반론합니다.

「조합 설립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2005년 7월 1일 변경된 농협법에 의거 2008년말을 기준회계년도로 선정하고 자산이 500억을 넘을 경우 2011년 외부회계감사를 2012년 1월과 2월 사이에 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규정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정관변경의 경우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면서도 통과시켰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당시 정관변경안은 참석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 정관변경안 중 세부조항을 조정하기 위한 의결사항이 있어 과반수 이상의 일반 표결방식으로 의결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오해가 있어 농협중앙회 법무지원부에 질의한 결과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선거시 일부지역에 통지를 하지 않고 즉석 뽑기로 선거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대의원 선거 10일 전 각 영농회 마을회관과 관할 지점에 공고문을 게재하였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선거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선출방식도 농협정관 131조에 의거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반론보도인 ○○○농협 조합장 김 ○ ○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7년 3월 14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기사제목크기는 소제목크기(지금까지 외부회계감

사...)의 고딕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〇〇〇 농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 모 씨는 평소 혈압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사인을 뇌졸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뇌졸중으로 사망한 신청인의 형이 평소 혈압이 높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부산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KNN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1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K N N : 「KNN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2006년 12월 18일 07:57)

내 용 : 술을 마신 뒤 목욕을 하던 40대 남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낮 10시쯤 부산 연산동 한 목욕탕에서 49살 강 모 씨가 쓰러진 채 숨겨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평소 혈압이 높았던데다가 술을 마신 뒤 무리하게 목욕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 합의사항

#### • 보도문

지난 2006년 12월 18일 뉴스와이드 “음주 뒤 목욕하던 40대 사망” 보도 관련 속보입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경 연산동 모 찜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 모 씨는 사인에 의문을 품은 유족들이 사인 규명을 요구한 결과 평소 혈압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의 보강수사결과 강씨의 사인은 뇌졸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KNN 라디오 2007. 3. 22. 18:00 뉴스프로그램에 방송하되, 보도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KNN-R : 「KNN 6시 뉴스」 프로그램 (2007년 3월 22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은 연구원주택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구청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후략)

## 연구원 주택의 불법 시공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건축인·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 ○ ○) 외 2인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1) 『‘연구원 주택’ 12명 사법처리』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1면)

내 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의 연구원 동호인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북부경찰서는 16일 연구원주택을 시공한 업체의 대표 A씨에 대해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 관계자 B씨와 특구본부 간부 C씨, 전 연구원 D씨 등에 대해선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3면)

(전략) 한 경찰 관계자는 “연구원주택은 애초부터 지어질 수 없는 건물로 온갖 불·탈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7년 1월 17일자 1면 『연구원주택 12명 사법처리』, 3면 『‘투기 누더기’ 막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 소재 우성이산의 연구원동호인 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 1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당시에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년 3월 3일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관련기사 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그동안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변해 왔으

나 경찰은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가짜건축주를 모집하고, 불법 형질변경을 통한 주택 건축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공무원들은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 등은 녹지지역에 동호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1개 세대당 100여만 원의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자연녹지인 우성이산을 불법으로 개발해 땅값 상승과 분양 등으로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소송 패소를 근거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은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음이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89,000,000원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27일자 1면에 『‘연구원 주택’ 12명 사법처리』, 『‘투기 누더기’ 막았다』 각각 제하의 기사 중 제1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대전 ○○구 ○○동 소재 우성이산의 연구원 동호인 주택 ○○○○빌과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공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관련자 12명이 누더기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공무원들의 경우 당시에도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2007. 2. 28.자

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결정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또한 제3면에서 시공업체와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편법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없다”는 등의 강변을 해왔다고 보도하는 등 ○○구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듯한 내용과 시공업체가 금품을 주고 가짜 건축주를 모집해 인허가를 받은 뒤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청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구청이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형질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대덕특구 불법개발에 앞장서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음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투데이 2007년 4월 2일자 2면에 2단 이상의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1면의 부제목(시공업체 대표…)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화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투데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병원 노조 집행부가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7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 (지부장 전 ○ ○)  
 피신청인 : 중부매일  
 증 재 부 : 충북증재부  
 접 수 일 : 2007. 3. 23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매일 :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4일자 4면)

내 용 : 보건의료원노동조합 ○○대학교 ○○병원지부가 지부 사무실과 인접한 휴게실에 CCTV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병원 측과 노조원들에 따르면 13일 이 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 측에 조합비가 입금된 통장 공개를 요구하던 중 휴게실에 설치된 CCTV용 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 일부가 발견됐다.

비상대책위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자신들과 반대편에 서있는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분명하다”며 노조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 역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경영회의 등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도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집행부 관계자는 “노조지부 사무실의 사건장치가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에 의해 훼손된 적이 있어 이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를 검토

했으나 카메라는 연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병원 노조는 노노간 심한 갈등으로 현 노조 측이 전 지부장을 공금횡령에 대한 의혹과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전임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

또 전·현직 노조 간부가 다툼을 벌여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각종 고소, 고발과 진정, 소송에 휘말려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2007년 3월 14일자 사회2면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조사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부사무실 내부에서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 및 병원관리자, 노조관계자 등의 입회 하에 확인한 결과,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 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휴게실은 휴게실 겸 회의실로 마련된 것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며 법적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으나,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는 설치된 바 없으며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임 노조 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고 한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부제목 :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관련
- 본 문 : 본지 지난 3월 14일자 4면 「○대○○병원 노조 CCTV ‘논란’」 제하의 기사 중
  - ‘경찰 조사 결과, 이 선은 노조사무실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조지부사무실 내부를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선만 발견되었을 뿐 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고 컴퓨터나 기타 동영상기록장치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대위 측의 요구로 별도의 노조컴퓨터에서 조합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노조휴게실은.....경영회의 등 주요회의가 열리는 것은 물론...그동안 일부 여직원이 탈의실로 사용해 온 장소’라고 보도한 내용은 휴게실이 탈의실로 사용된 바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현 노조관계자는 휴게실이 병원 회의실로 사용된 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전임노조집행부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집행부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진정해 일부 관계자가 기소되기도 했다는 내용은 아무도 기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매일 2007년 4월 5일자 2면에 2단상자기사로 게재하되, 부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같은 면(10장 1묶음에 15만 7천 200원...)갈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한다.

또한 위 정정보도문을 중부매일 인터넷판(www.jbnews.com)에 2007년 4월 4일 오후 10시부터 3주

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특정 신문에 대한 기고 및 인터뷰를 금지하는 국정홍보처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청무직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기 숙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15일자 A35면)

내 용 : 조선일보 문화면을 펼치면 ‘일사일언’이 있다. 200자 원고지 너 장짜리 짙막한 글이어도 1933년 생겨 74년을 독자와 함께 호흡해 온 고정란이다. 매달 네 명씩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일상 속 살아가는 애기와 삶의 지혜를 번갈

아 잔잔하게 펼쳐낸다. ‘일사일언’ 74년 역사에 일찍이 없던 일이 벌어졌다. 3월 필자 중 한 사람이 지난 6일과 13일자에 글을 실은 뒤 “하도 ‘위쪽’에서 뭐라고 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며 기고를 포기했다. 이 필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원장이다. 그는 “내가 ‘관 쪽’에서 일하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기관장이 말한 ‘위쪽’이 누군지는 새삼 밝힐 필요도 없다. 국정홍보처는 2005년 특정 신문에 대한 공직자 기고와 인터뷰를 금지하는 지침을 모든 부처에 보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에 글을 실거나 인터뷰를 한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등에게 경위를 따지고 내부 감사보고서와 경위보고서를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5일자 오피니언란에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수석 조기숙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기숙 씨는 누구에게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정책홍보기준이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3월 15일 A35면에 실린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자의 붓 꺾은 정권』 제하의 사실 중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씨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기숙씨는 “정책홍보기준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인권침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며 사퇴 종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25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는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게재하는 ‘반론보도문’의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매일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지출비중을 축소해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7.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향신문 :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제하의 기사 (2007년 3월 2일자 1면)

내 용 : 참여정부가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3월 2일자 1면에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 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비율을 2001년보다 축소하여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좌우하는 정부의 예산·기금편성은 2002년에 이전 정부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결정하지 않았으며 2006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율은 2003년 5.7%로 2001년

5.4%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으므로 참여정부가 2003년 공공사회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본 문 : 경향신문 3월 2일자 1면 『노 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2003년 공공사회지출 관련 예산·기금편성은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새롭게 변경된 GDP산정방식에 따르면 2001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율은 5.4%이고 2003년에는 0.3%포인트 증가한 5.7%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7년 4월 1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2007. 3. 13자 2면 '알려왔습니다'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경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웅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해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 90%가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웅천발전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TJB-TV  
 종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 보도내용

TJB-TV :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3월 6일 18:00)

내 용 : (전략)

▷유PD : 보령산업폐기물 매립장 재허가 공방 상태를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산업폐기물이란 무엇인가. 산업폐기물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같은 쓰레기이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서 정부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분리수거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립해야 되는 산업폐기물만 해도 하루에 대전 300톤, 충남 2,800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립장은 현재 충남 당진 단 한곳에 불과해 지역폐기물 상당량이 외지로 반출되는 실정입니다. 먼 거리만큼 처리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령시에서도 지난 96년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이후 허가갱신이 안 되자 매립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매립장은 현재 폐허로 방치된 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침출수 처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 사업자는 허가갱신노력 끝에 사업이 부도난 뒤 사망했고 새로운 업체가 사업을 이어받아 인·허가를 내려 했으나 그것 역시 벽에 막히자 관리책임주체가 없는 셈입니다. 당초 1, 2차 사업지는 15,000평 3차 사업지로 3만 평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보령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

에서 준보전임지로 현장을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1, 2차 사업허가를 내주고도 3차에 와서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관광보령의 이미지에 먹칠한다, 보령시의 폐기물 발생량이 적다, 지형이 불균형된다. 이는 법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중략)

▷유PD : 그렇다면 과연 관광보령 이미지라는 주장은 합당할까, 보령시에서는 바닷가 갯벌 체험장 바로 옆에 생활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작년엔 개설했습니다. 강력한 주민반대여론을 뚫고 그것도 대표적 관광지 바로 옆에 쓰레기처리장을 추진한 보령시의 정책을 보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최○○ : 저희들이 비행기 폭격장이 있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죠. 그 뿐만 아니라 보령화력이 대한민국 최대 규모 보령화력이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온·폐수나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공기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매립장이 그것조차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니냐 저희는 그런 주장입니다.

▷유PD : 달갑지 않은 환경시설을 반대한다는 정서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폐기물매립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마을주민의 약 90%는 인·허가 찬성입장입니다.

▷황○○ : 저런 걸 생태공원화해서 사업종료 되면 그것도 관광자원으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회시하고 있었는데 갖은 지들이 노력을 해 봐도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지도 않고 시에서 저걸 좀 어떻게 잘 좀 해서 저희 마을도 좀 소득창출도 되고...

▷유PD : 상당수의 주민들은 매립장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데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침출수 처리장인데 사업을 인수한 업체가 2년간 가동

하다가 지난 연말부터 연간 2억 원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가동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침출수는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이 흘러나옵니다.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침출수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폐기물을 뚫고 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각한데 시설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이 지난 3월 6일 18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웅천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보령시가 폐기물 매립이 중단된 매립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존임지에서 준보존임지로 용도변경까지 해 준 상황에서 3차 허가를 불허하여 사업은 7년째 공전하고 있으며, 매립장을 방치하여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의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보존임지를 준보존임지로 용도변경한 것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폐기물 매립장은 차수막을 바닥에 설치하여 폐기물 매립 후 다시 차수막을 덮은 다음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와 나무를 심도록 설계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침출수의 양이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의 부도 이후 보령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대전방송이 지난 3월 6일자 오후 6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웅천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찬반 여러 갈래로 민심이 흩어져 있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침출수는 지금도 하루 평균 8톤이 흘러나오고, 장마철에는 하루 60톤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웅천발전협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건과 관련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웅천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침출수는 하루 8톤 미만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도 이후 보령시에서 침출수의 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침출수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7년 4월 13일 오후 6시 「뉴스 스테이션」 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청색화면에 흰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2007년 4월 13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OECD 검토단이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28  
 처 리 결 과 :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대학자율 막는 3不정책 없애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6일자 A1면)

내 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 입시의 '3불 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다. 3불 정책은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부금 입학제는 절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OECD는 최근 공개한 '한국 고등교육(대학) 보고서'에서 "한국의 3불 정책 등이 포함된 획일적인 입시는 젊은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대학이 원하는 학생을 자신의 방법에 따라 뽑을 수 있다면 미래가 밝은 학생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OECD는 "3불 정책이 투명한 다른 제도의 준비 없이 지나치게 빨리 없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건을 달았다. (후략)

(2)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교육 혁명안 내놓으라』 제하의 기사 (2007년 2월 27일자 35면)

(전략) OECD 교육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학 입시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못하게 한 '3不 정책'부터 없애라고 했다. 대학에 신입생을 어떻게 선발할지 결정권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OECD는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행정은 그 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는 말까지 했다. 빌 게이츠가 수학과 과학 교육을 혁명해야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

다고 역설하고 있는 동안 한국 교육부는 고교생들이 '수학·과학·기술·가정'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해도 된다는 교과목 개편안을 발표할 정도이니 그럴 만도 하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가 2월 26일자 1면 『“대학자율 막는 3不정책 없애야”』와 27일자 35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교육 혁명안 내놓으라』 제하의 기사에서 “OECD가 우리 정부에 대해 대학 입시의 3불정책을 사실상 없애라고 조언했으며,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학행정은 그 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고 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OECD 검토단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등교육 관리시스템이 향상되지 않은 현 체제 하에서 3불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3불정책부터 없애라'고 한 바 없으며, 또한 발전적인 규제를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위원회 신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곧 바로 고등교육위원회를 신설하라고 한 것이 아니며, 고등교육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면 교육부는 규제 책임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는 것이며 OECD 검토단이 대학행정은 '고등교육위원회'에 맡기고 교육부는 손을 떼라고 한 바가 없다고 교육부는 알려왔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본 문 : 지난 2월 26일자 1면 및 27일자 35면의 OECD보고서 내용 기사와 사실과 관련해 교육부는

동 보고서가 3불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 있지만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는 주의해야 하고, 또한 고등교육위가 교육부 역할을 모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예시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7년 4월 10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하고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2월 26일자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OECD, 한국정부에 조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산자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산업자원부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7. 3. 30.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대구MBC-TV : 「포커스 M」 프로그램 (2007년 3월 16일 23: 30)

내 용 : ▷김병창 기자 : 무려 19년이나 끌어온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듯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차라리 방폐장을 반납하겠다고 최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2달여 앞둔 지난 2005년 8월 10일 당시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경주시를 찾아와 시청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원 유치단체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도 더 잘사는 곳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원 보다도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라며 6조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회범 전 산자부 장관 : 산자부가 운영하는 게 2조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그리고 에너지에 관련된 자금이, 에너지 특별회계가 한 2조 4천억 정도되고, 전력기반기금이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사실은 가용재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 기자 : 간담회 바로 다음날 백상승 경주 시장은 방폐장 유치 신청을 선언했고 산자부장관의 발언은 주민설득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략)

▷김병창 기자 :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무려 90%에 가까운 찬성율로 유치한 방폐장, 그러나 환상은 불과 1년 반만에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1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 간담회. 이 자리에 참석한 산자부 고위 관료를 상대로 경주시는 이회범 전 산자부장관의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 산자부 이회범 장관님 그 부분은 그게 참... 곤욕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그게 연고지가... 이곳이고 해서 상당히 애향심의 발로로서 상당히 의욕있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백업해주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정부 예산의 틀과 법의 실정법의 틀을 그렇게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창 기자 : 이같은 사태의 발단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의 규모를 두고 경주시와 정부가 보인 엄청난 시각차이입니다.

지난해 6월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사업으로 118건의 88,526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지난 1월에야 알려졌습니다.

경주시가 요청한 대로 수용한 것은 겨우 6건, 금액으로는 요구액의 3.9%에 그치는 3,512억 원뿐입니다. 조건부 수용이 36건에 15,553억 원, 일부수용은 8건에 12,813억 원, 그러나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 수용사업 가운데 양북면 봉길리와 이일리간 지방도 929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양북 대종교에서 감포전충간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는 방폐장 때문에 어차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을 지켜라>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대구MBC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송한 「포커스M」 프로그램에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완료되었거나 이행중입니다.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은 2006년 5월 9일 경주시 명의를 통장으로 이미 지급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이전부지가 선정되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은 2006년 3월 30일 경주시-한국원자력연구소간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은 경주시 요청사업을 접수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방폐장 유치 당시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며 6조 원 이상의 가용자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이 장관이 “한수원 본사나 양성자가속기, 특별지원금 3,000억 원 보다 유치지역지원사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6.2조 원 이상의 가용 자금”이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지역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지원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지원가능 사업은 경주시 요청 원안 수용 6건 외에도, 조건부 수용 36건, 일부 수용 8건등 총 5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 사업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방폐장’ 지원 관련 산자부 반론보도문
- 본 문 : 다음은 반론보도문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3월 16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약속 지켜라’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2005년말 주민투표에 앞서 유치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약속한 사항 중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지원’ 부분과 ‘한수원 본사이전’ 부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사업’ 부분은 이미 지원을 완료하거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2005년 8월 있었던 유치관련 장관 간담회에서 언급된 6조 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이 액수는 가용예산 규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지원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회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치지역지원계획’이 다른 지원사업 예산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덧붙여, 산업자원부는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유치지역지원사업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며

유치지역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구 문화방송 「포커스M」 프로그램 말미에 2007년 4월 20일까지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하단에 푸른색 바탕의 흰색 정지자막으로 게재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구MBC-TV : 「포커스M」 프로그램 (2007년 4월 20일 23: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소속 노조원들이 망향휴게소의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사측조치를 비난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최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7. 4. 23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매일경제 :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9일자 A39면)

내 용 : 노조가 경영진의 임원해고를 노조해체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벌

어졌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망향휴게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노조원 30여명은 최근 사측의 인사조치에 항의하며 사무실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사측 한 모 소장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노조원들은 10년 이상 휴게소장으로 일해 오던 최모 상무가 지난주 해임되자 반발해 왔다. 노조 측은 사측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임 소장 등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원들이 인사조치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휴게소 주변에 써 붙이고 경리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는가 하면 내부 전산시스템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망향휴게소 관련 민주노총 집회 사실과 달라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4월 19일자 인터넷 전자 기사 및 사회면에 『아무데나 나서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휴게소 사무실을 찾아와 사측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며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은 ‘한미FTA무효! 고 허세욱 동지 민족민주노동열사장’에 참석한 후 망향휴게소에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신분을 알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장 및 관리사무소에 대기중인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을 들었을 뿐이며, 불법집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 모

상무가 지난주 해임되자 반발해왔다”고 보도하였으나 해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사회부장 및 기사 작성 기자 중 1명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19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충남본부 및 이민구 조직부장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7서울조정151  
 청구명 : 반론청구  
 신청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7. 4.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한국경제 : 『이밥에 쇠고기』 제하의 기사 (2007년 4월 10일자 39면)

내 용 : 협상은 끝나고 공치사만 남았는지... 모처럼 찬성표가 많아졌으니 대통령에서부터 실무진까지 박수를 받고도 싶을 테다. 이쯤해서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도 쌀 시장을 지켜냈다”는 자화자찬이나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70여개 국에 이르는데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뼈조각을 문제 삼아 전량 반송한 나라가 또 있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소뼈라면 갈비나 등뼈 꼬리뼈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말이다. 살코기를 발라내면서 튀어 들어간 밀리미터 단위의 뼈조각을 문제 삼은 것부터가 실은 억지였다. 그것도 800상자를 이잡듯 뒤져 겨우 몇 건을 발견해냈다는 실로 악의적인 조사였다. X-레이로도 나오지 않자 상자를 풀어헤쳐 육안 검사까지 동원했으니 미리부터 ‘살코기’라는 단어에 함정을 깔던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믿지 못할 상대가 되고 말았고 서면 약속 따위의 모욕을 받아 쓴 나라가 됐다. 나중에 똑같은 보복을 당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항변할 것인지... (전략)

입만 열면 미국 소를 저주하는 광우병 문제는 더욱 그렇다. 일본이 전국을 뒤져 수백 만 마리의 소를 전수검사했던 것은 국제적 화제였지만 한국에는 광우병이 과연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도 불명이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 때문에 발병한다고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가 우선 믿을 수 없다. 유럽 측 통계에는 분명 한국에 동물성 사료를 수출했다고 돼 있는 것이 왜 한국 통계에는 없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조차 나온 적이 없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역시 어물쩍 덮고 지나갔다. 더구나 한국은 사료의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가 말이다. 만일 축산 농가

로부터 광우병 발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청정지역이라는 주장의 유일한 근거였다면 이런 우스갯소리가 다시 없다.

쌀 수입 문제도 다를 것이 없다. 한국은 소비량의 4%를 중국을 위시한 외국으로부터 매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이미 관세화를 통해 개방했고 대만 역시 시장을 열었다. 국제 가격을 무력화시키는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것 중 무엇이 실제 수입량을 줄이게 되는지 정밀한 계산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수입을 거의 안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까지(2014년) 의무수입하는 일빠진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장래 개방 시점에 적용하게 될 관세율은 지금도 매년 착실히 내려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말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쌀은 막았다”는 주장은 쌀 문제를 2014년의 문제로 미루어 놓는 책임 회피일 뿐이요, 쌀을 성역화하는 또 다른 선언에 불과하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본지는 2007년 4월 10일자 A39면 『이밥에 쇠고기』 제하의 칼럼에서 ‘한미FTA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기만과 허위로 가득차 있으며 쇠고기 뼈조각으로 국제망신을 당하고도 개방일자를 놓고 여전히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도 그렇다. 한국에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데 미국 소의 광우병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쌀의 경우 높은 관세로 개방하는 것과 낮은 특혜 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것의 실익 계산 없이, 수입을 거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소비량의 8%(2014년) 의무수입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뼈조각이 검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방송한 것은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다. 미국이 금년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으로 평가 받더라도 WTO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위험평가’ 등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방일자를 정할 것이다”라고 밝혀왔으며, 또 우리나라의 광우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철저한 BSE 예찰검사('06년까지 18,855마리)를 실시하였으나 의심사례가 나온 적은 없다. 칼럼에서 제기한 광우병 원인인 동물성 사료 수입문제는 우리나라 관세청 사료 수입실적과 단미사료협회 사료수입추천실적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 동물성사료(육골분)를 수입한 실적이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쌀 수입에 대해서는 “2004년 쌀 협상 당시 2005년 말 DDA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나 DDA협상 조기타결·지연여부가 불확실했다. 이에 WTO 보조금 및 관세의 감축수준 예측이 어려워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물량의 증량 없이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서 관세화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또 2005년부터 DDA 타결시까지 2005년도 관세율을 DDA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담은 담당 국장 명의의 기고문(200자 원고지 4~5매 내외 분량)을 작성하여 2007년 5월 10일까지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고, 피신청인은 이 기고문을 2007년 5월 20일까지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게재방식은 통상의 기고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국』 제하의 기사  
(2007년 5월 12일자 30면)

내 용 :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협상이 이뤄졌지만 가장 뜨겁게 이슈화됐던 품목 중 하나가 쇠고기다.

특히 FTA 협상과 별개의 사안으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협의로 진행됐던 쇠고기의 검역·위생 문제가 더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것이다.

지난번 세 차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뼈 조각 문제로 인한 불합격 조치 등 지금까지의 검역조치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미국 봐주기는 더욱 아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와 관련, 국내에서 광우병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가며, 철저한 방역관리가 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소 1만 9,000여 두를 검사했으나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도부터 광우병이 다발하는 유럽 국가의 동물성 사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유럽측 통계에서 동물성 사료가 우리나라로 수출됐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국내 관세청 통계 등을 통해서 수입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금년 5월 말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다른 10개 국가와 함께 광우병 위험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WTO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대응할 것이다. □